

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사무소 신청사 준공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혜화동사무소의 소재지를 “명륜4가 1”에서 “혜화동 74-30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건축과-12875(2006.9.29)호에 의한 준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로, “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(이하 “동사무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제2조중 “[별표]”를 “별표”로 한다.

별표의 혜화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중 “명륜4가 1”을 “혜화동 74-3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의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	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</u>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「 <u>서울특별시 종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</u> 」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(이하 “동사무소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.
제2조(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) 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<u>[별표]</u> 와 같다.	제2조(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) ----- ----- <u>별표</u> -----.

[별표]

현행					개정				
구분	동사무소 명칭	동사무소 소재지	법정동관할		구분	동사무소 명칭	동사무소 소재지	법정동관할	
			전지역관할	일부지역 관할				전지역관할	일부지역 관할
종로구	혜화동	명륜4가 1	혜화동, 명륜1가, 명륜2가, 명륜4가		종로구	혜화동	혜화동 74-30	(현행과 같음)	